

별첨 1.

생활교육 상벌점제 규정

개정 2021. 0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2조(방침)

1. 전 교사가 참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학생 교육에 임한다.
2. 체벌을 없애고 긍정적 행동은 강화시키며, 부정적 행동은 교화시켜 나가는 생활교육 정책으로 추진한다.
3. 벌점 부여보다는 상점 부여를 통한 행동교정 및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을 유도하도록 노력한다.
4.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게 한다.
5. 학생들이 준법정신, 질서의식과 봉사정신 등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6. 벌점의 과도한 적용 보다는 훈계 및 현장의 교육적 교육으로 학생 교육을 유도한다.
7. 생활안전교육부장은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점과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1. 학생의 상·벌점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위원회 학생선도분과소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상·벌점제는 함께 운영되며, 상점부과에 의한 벌점 차감을 시행한다.
3. 상·벌점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적 점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벌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4. 상점과 벌점은 3년동안 누적되어 적용한다. 단, 학년말에 누계 벌점자는 다음 학년으로 이월하고, 누계 상점이 있는 경우 시상 후 삭제한다.
5.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6. 선출 시점에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학생회 및 학급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7.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수여하는 각종 혜택 이외에 당해 학년 각종 포상관련 추천 및 장학금(목적 장학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장 추천 제외) 추천을 제한한다.
8. 모범부문 표창(선행상, 예절상 등)은 누계상점이 2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9. 상벌점은 교사 1인 1회에 3점 이상 초과 발급 할 수 없다.(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는 5점까지 가능하다.)

10. 상점발급 기준은 시간당 2점으로 한다.
 11. 별점 초과로 인한 교내봉사인 경우 일과시간 중에는 봉사를 할 수 없으며, 일과시간 이외에 별점 차감 봉사를 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이외에 별점 차감 점수는 시간당 2점으로 한다. (단, 4단계교육 이상인 경우 일과시간 중에 할 수 있다.)
 12. 규정에 의한 별점 초과 시 교육 단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별점이 높은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3. 담당교사는 상·별점 누계를 월 1회 통계 내어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교육대상학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단계적인 교육을 권고하여야 한다. 단, 이에 불응하는 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4. 상·별점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수정할 수 있다.
 15. 상·별점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중 학생생활규정 징계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16. 중요한 사항 위반시 담임과 학부모에게 SMS문자를 발송한다.
 17. 개인정보는 기본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제4조(상점)** 상점은 모범학생 추천 및 개인 별점을 차감하는데 이용하고, 당일 같은 이유로 동일 학생에게 상점을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상점 발부는 해당교사가 바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상별점 프로그램 설정을 활용하여 추후 입력한다. 상점의 내용은 [표1]과 같다.
- 제5조(별점)**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별점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별점 발부는 적발교사가 바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할 경우 상별점 프로그램 설정을 활용하여 추후 입력한다. 별점의 내용은 [표2]와 같다.

제2장 교육단계

제6조(교육단계) 별점이 높은 학생은 [표3]에 의하여 단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1]

상점 내용	
점 수	내 용
1점	1) 예의 바른 학생 2) 궂은일을 솔선수범한 학생 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2점	4) 습득물 신고 5) 학교 시설물 고장 및 훼손 신고 6) 학생관련 사건 및 사고 발생 신고 7) 중대한 교칙위반 사항(폭력, 절도, 음주 등) 신고 8) 자격증 취득(당해년도) 9) 방학 중 등교 봉사활동(시간당 2점) 10)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3점	11) 모범학반 표창 해당 학반 학생 12) 교내·외 행사 및 학생자치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교사 1인 추천시) 1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5점	14) 학교장 표창, 타 기관장 표창 15) 교내·외 행사 및 학생자치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교사 2인 추천시) 1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10점	17) 재해지역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 활동한 자 18) 가족 이외의 어른을 공경한 자로서 도움 받으신 어른의 추천이 있거나, 주민 및 목격자(가족 제외)의 추천을 받은 자 1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
기타	· 상점 5점 이상 부과시는 생활안전교육부의 확인이 된 경우만 허용됨 · 위 표의 사안은 교육환경변화 대응 및 신속한 의견반영을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가, 개정할 수 있다.

[표2]

별점 내용		
항목	내용	점수
출결상태	1) 무단 지각, 결과, 조퇴(시간당 1점)	5점 이내
	2) 무단 결석	1일 5점
용의 복장	3) 두발 불량 및 변형	2점
	4) 미용 (화장, 네일아트 등)	2점
	5) 악세사리 부착	2점
	6) 복장 불량 (교복 변형 포함)	2점
	7) 명찰 미부착	2점
	8) 실내·외화 미구분	2점
	9) 가방 미소지	2점
수업태도	10)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학습태도 불량, 타인 학습방해 등)	3점
	11) 수업 중 휴대폰, MP3등 전자제품 사용	3점
	12) 학생 비선택형 수업 불참 (시간당 1점)	3점 이내
교내·외 생활	13) 휴지 및 오물 투기 (침, 쓰레기 등)	2점
	14) 욕설 행위를 하는 경우	2점
	15) 담임교사의 허락없이 다른반에 무단 출입한 행위	2점
	16) 빈 교실(특별실)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10점
	17) 무단외출 및 월장	3점
	18) 무단 횡단	3점
	19) 거짓된 진술	3점
	20) 생활교육 시 타인의 명찰을 도용하거나 도주한 경우	5점
	21) 학교 기물 파손 <징계처리사안>	5점
	22) 약속 불이행 (시간을 주어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점
	23) 책임활동 불이행 (청소 및 봉사활동 불참 및 도주 등)	5점
	24)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교권침해가 아닌 경우)	3~5점
	25) 불건전한 이성교제 <징계처리사안>	2~5점
	26) 주인 허락없이 타인의 책을 가지고 가거나 사물함을 뒤흔드는 행위	5점
	27) 도박 및 외설물 소지	5점
	28) 오토바이 탑승 <징계처리사안>	
	29) 흡연자 및 비흡연 동석자 (담배,ライター 소지 포함) <징계처리사안>	
	30) 음주자 및 비음주 동석자 (술 소지 포함) <징계처리사안>	
	31) 심한 장난 <징계처리사안>	
	32) 기타 교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준하는 경우	1~3점
기타	· 중대 사안 위반시(폭력, 절도, 흡연, 음주, 교권침해, 오토바이 등)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한다.	
	· 위 표의 사안은 교육환경변화 대응 및 신속한 의견반영을 위해 규정개정심의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가, 개정할 수 있다.	

[표3]

교육단계				
별점 차감 봉사 활동을 한 경우				별점 차감 봉사 활동(높은 뜻 교실, 바른 길 교실 등)을 안한 경우
교육단계	해당 내용	주 관	교육 내용	
1	누계별점 20점 미만	담임	상담, 훈계	생활교육위원회 처리
2 (높은 뜻 교실)	누계별점 20점 이상	담임, 학년 생활지도계	학부모 통보 및 내교 상담 높은 뜻 교실 이수 (심성수련, 깨끗한 환경 조성, 반성 및 다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 일과시간 외 학교내의 봉사 10시간)	
3 (바른 길 교실)	높은 뜻 교실 이수 후 누계별점 20점 이상	담임, 학년 생활지도계, 생활안전교육부	학부모 통보 및 내교 상담 바른 길 교실 이수 (개인면담, 심성수련, 깨끗한 환경조성, 반성 및 다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된 일과시간 외 학교내의 봉사 10시간)	
4	바른 길 교실 이수 후 누계별점 20점 이상	생활안전 교육부	생활교육위원회 처리	
※ 별점 차감 교내 봉사 지침 :				
· 일과시간 외 학교내의 봉사(영어 단어 쓰기, 한자 쓰기, 환경 미화, 상담 등) 10시간 교육 받음.				
· 교육 받은 내용은 학생이 직접 학생 생활 실천록에 기록한 후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				
· 담당교사가 확인 후 별점 20점 차감.				

제3장 규정의 개정

제7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할 수 있다. 단, 교육관련 법규나 상급기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과 용어 수정 및 신속한 의견반영을 위한 개정은 심의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